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07
------------	-----

2019. 6. 2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9. 5. 24.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2019. 5. 30. 회부)

2. 제안이유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기준 등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 확대 (안 제7조제1항제1호사목3) 및 제2호라목)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명시하여 향후 정비구역 등 해제 시 추가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호, '19.1.3)을 즉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호부터제4호까지)
- 위원 해임·해촉 사유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로 인지될 수 있는 '장애' 단어를 변경(안 제5조의3 제1호)
- 대지의 조경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해석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안 제24조제3항)

- 미술장식품의 법적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8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 (2019. 3. 21. ~ 4. 10.)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중·소규모의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용어 수정 등 건축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안 제7조제1항제1호 사목3) 및 제2호라목)

- 먼저, 안전 위해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에 대한 시 건축위원회 심의(이하 ‘굴토심의’) 대상을 확대하였음.

이는 작년 금천구 가산동(‘18.8.31), 동작구 상도동(‘18.9.6)에서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서울시는 긴급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시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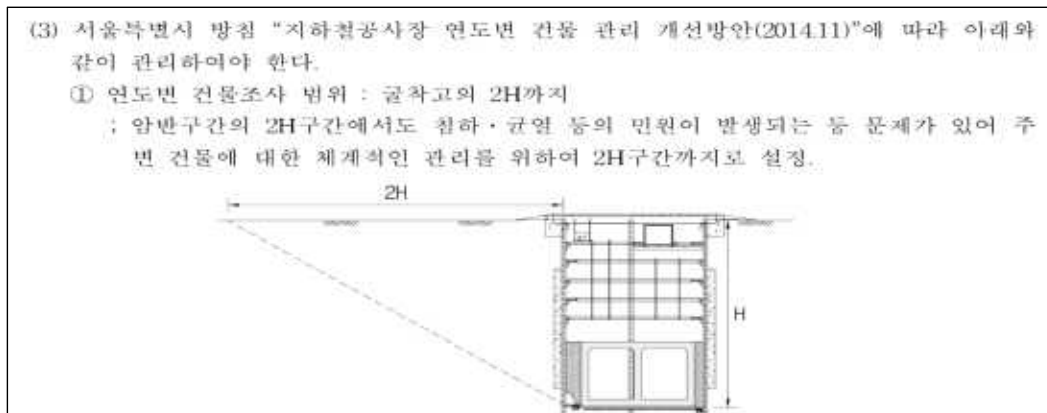
- 현행 굴토심의 대상은 조례 제7조제1항사목에 따라 1) 깊이 10m, 지하 2층 이상 굴착하거나, 2) 굴착깊이와 옹벽높이의 합이 10m 이상인 경우이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서울시가 자치구로 시달한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대책 관리(‘18.9)’에서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 하였는데, 금번 조례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였음.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대책(‘18.9) 상 굴토심의 대상>

1. 깊이 10m, 지하2층 이상 굴착
2. 굴착깊이+옹벽높이의 합이 10m이상
3.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 노후건축물이 있는 경우
 -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등 *노후건축물: RC조 등(30년), 조적조 등(20년)

- 세부적으로 ‘굴착깊이의 2배’라는 공간적 범위 기준, 노후건축물 및 옹벽·석축 등 시설물 종류 기준은 ‘굴토전문가 자문회의(‘18.9.17, 붙임 참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굴착깊이의 2배라는 근거는 ‘서울 지하철 계측 관리 요령(‘15.5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의 유사 항목의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파악됨.



<서울 지하철 계측관리 요령(‘15.5), 지하철 공사장 연도변 건물관리 기준>

- 또한 대상 범위 내에 ‘노후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노후건축물 외에도 ‘문화재’를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문화재’는 노후건축물 범위¹⁾에 대부분 포함된다는 이유로 반영되지는 않았음.

○ 종합하면, 굴토심의회와 관련한 개정조문은 그간 허가권자가 현장 여건에 따라 굴토심의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작년 9월 이후 방침으로 운용되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바. (생략) 사 . (생략)</p> <p>1)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공사</p> <p>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의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3) 그 밖에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p> <p>2.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 라 . (중간생략)제1호사목 1)부터 3)까지의 사항</p>	<p>제 7조(기능 및 절차 등) (현행과 같음)</p> <p>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바. (현행과 같음) 사 .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u>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노후 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u></p> <p>4) 그 밖에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p> <p>2.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 라 . (중간생략)제1호사목 1)부터 4)까지의 사항</p>

1)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의 효율적 운영 관련** (안 제33 조제2호부터 제4호)

- 현행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기준’은 상업지역,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 시장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높이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적용해야하는 대상지 내에서 정비계획이 해제되는 경우, 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시장이 높이를 고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해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서울시 공고 2019-2호, ‘19.1.3)을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관련절차를 개선 하려는 것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공고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 작성·고시의 예외 적용이 가능함.
- 이는 구역해제 이후 해당구역의 높이 범위 설정만을 대상으로 공고 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가운데, 공고 절차가 이행되기까지 해당 부지는 높이 기준이 부재한 기간이 발생하게 되며, 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는 서울시 기준 상 산출식에 의해 높이를 결정 해야 하는 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역해제 시 공고절차 없이 높이 기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운용 현황>

대상지	운영 방법	운영 기준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축 조례로 운영	· 주 거 용 : 2층 이하, 높이 8미터 이하 · 비주거용 : 2층 이하, 높이 11미터 이하
주요 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45개소 지정) (필요시 연차별 추가 지정 공고 및 지형 도면 고시)	현황조사를 통한 절대높이 제한 (간선부/미면부 절대높이 지정)
상업·준주거· 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공고 (사전제한 폐지에 따라 용적율이 비교적 높은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높이기준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 폭원 및 대지 중심길이에 따른 산식에 의한 높이 산정(아래 참조)
도시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장비계획구역 등)	해당 관계법령에 따름	해당 계획에 따름

※ 타 용도지역 등은 용적률,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등으로 건축물 높이 관리

※ 참고.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높이 기준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중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대상으로 높이 기준 적용
- 기준 높이 산출식 : $H = (W+L/2) \times \alpha$ (W : 전면도로의 너비, L : 평균 중심길이, α : 도로폭원별 높이계수)
- 공공성 확보 시 기준높이의 1.2배까지 완화(공개공지, 기부채납, 건축헌계선, 조경면적 확보 등)
- 대지의 형상 등으로 기준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높이 완화 가능'

- 그러나 '상업지역·시가지·특화경관지구'에 대하여 높이를 정하도록 한 현행 조례안의 취지는 주요 가로변의 경관과 미관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의 고밀 용도지역 분포와 상이하므로 현행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따라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 지역'의 고밀 용도지역과 관련한 부분은 단서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겠음.
- 그 외 적용 사업 및 대상에 대한 개정안은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만 국한하여 가로구역높이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으나, '18.2.9.자로 개정·시행된 現)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기타 정비계획에서 별도로 높이를 지정하는 정비구역은 가로구역높이기준 적용 배제를 확대하며, 한양도성에 대하여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 높이기준이 제시된 ‘역사도심기본계획’을 따르도록 명확히 한 사항으로 이해됨.

▶ 그 밖의 건축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관련

- 기타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임·해촉 사유를 개정(안 제5조의3제1호)하고, 대지의 조경 기준과 관련하여 해석이 용이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안 제24조제3항), ‘미술장식품’의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안 제48조제2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타법상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
연 락 처	02-2180-8208
이 메 일	urbanth@seoul.go.kr

【붙임 1】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추진경위

- 굴토공사(건축)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 ‘15. 3. 16.
 - 굴토심의 전면 시행 (행정2부시장 방침 제89호)
 - ◆ 지하2층 이상 또는 지하10m 이상 굴착공사
- 소규모 석축·옹벽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개선계획 ‘15. 10. 28.
 - 굴토심의 대상 확대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4호)
 - ◆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추가
-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16. 1. 29.
 - 법령 개정건의 및 연구용역 추진 등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호)
- 도심지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부 ‘17. 1. 25.
 - 인·허가 담당자 및 건축관계자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배부
-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 건축법 개정·시행 ‘18. 4. 19.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마련
 - 하위 규정 공포·시행 [시행령(‘18.6.27.), 시행규칙(‘18.6.15.)]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공포(시행) ‘18. 7. 19.
 -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규정 신설
- “안전사고 제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18. 7. 31.
 -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6호)
-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 수립 ‘18. 9. 21.
 -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에 대책 시달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8호)
- 서울시·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 본격 가동 (19년 22개구, 20년 3개구)
 - 공사장 및 지진·화재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 임의관리대상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업무 등

【붙임 2】 건축물 굴착계획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 : 2018.9.17.(월) 16:00~
- 장소 : 신청사 3층 건축기획과
- 참석자
 - (내부) 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팀장, 담당
 - (외부) 5명

□ 회의결과

〈굴토심의 운영기준 강화방안〉

: 굴토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확대

- 심의대상 범위를 굴착저면에서 경사도 1:1.5 이내로 하는 경우 경사로의 경우 경사도에 따라 광의의 범위가 될 수 있고, 일선 자치구에서 심의대상 판단여부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 굴토심의 대상은 **굴착깊이의 2배 범위**로 노후건축물,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로 결정하는 것이 적정(시설물은 삭제)
 - ※ 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붙임 3】 관련 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74호, 2018. 6. 12., 타법개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6.>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외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에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41호, 2018. 6. 5., 일부개정]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나.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3. 해도나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수면을 포함하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해수면 부분만 해당한다)

④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8. 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할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일
3. 지역·지구등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⑧ 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3.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⑨ 법 제8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8. 30., 2012. 1. 26.>

1.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제3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지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

다. 제8항제1호와 관련된 전산자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전산자료는 제외한다)

2.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가.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기 곤란한 사유

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